하남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하 남 시

【 복 지 정 책 과 】

하남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3. 2. .
제 출 자 : 하 남 시 장

1. 제정이유

○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긴급 지원 대책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2. 주요내용

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주민등의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1조)

나. 지원대상자의 범위, 지원방법, 지원내용(안 제2조 ~ 안 제4조)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4.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6. 예산수반 사항 : 덧붙임(비용추계서)

7. 입법예고 결과

가. 예고기간 : 2023. 2. 4. ~ 2023. 2. 7.(4일간)

나. 의견내용 : 의견 없음

8. 부서협의 결과 : 덧붙임

가. 규제개혁 관련협의 : 해당없음

나. 성별영향 분석평가 : 의견없음

다. 부패영향 분석평가 : 의견없음

9. 참고사항 : 해당없음

10. 관련부서 : 경기도 복지정책과

하남시 조례 제 호

하남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의 범위)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하남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주거기본법」, 「청년기본법」에 따라 시행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
3. 그 밖에 시장이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지원방법) 지원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안정에 필요한 현금과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내용)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항목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생계비

2. 교육비

3. 주거비

4. 의료비, 해산비

5. 난방비

6. 전기요금

7. 장제비

8. 명절・연말・기념일의 위문금・품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기간, 지원 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자의 조사 및 결정 등) 지원대상자는 시장이 결정하되, 동장은 그 관내에서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조사하거나 직권으로 저소득주민의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3.12.31.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서명		복지정책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 · 성명	복지정책과장 박 종 현
	팀장 직위 · 성명	복지기획팀장 지 종 수
	담당자 성명 · 전화번호	김 보 라 (790-5723)

【별지 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하남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조

나. 비용 발생 요인(안)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당 20만원

○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대상자 가구당 20만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안)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당 20만원×5,565가구×1회 = 1,113,000천원

○ 차상위계층 가구당 20만원×1,872가구×1회 = 374,400천원

○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대상자 가구당 20만원×400가구×1회 = 80,000천원

나. 추계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년	년	년	년
총 소요액		1,569				
난방취약계층 긴급지원	기초생활수급자	1,113				
	차상위계층	376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대상자	80				

다. 재원조달방안 : 예비비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장 박 종 현

【별지 서식】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입							
세 출		1,569,400					1,569,400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대상자		1,113,000 374,400 80,000					1,113,000 374,400 80,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569,400					1,569,400
	지방세	784,700					784,700
	세외수입	784,700					784,700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관계법령 발췌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2. 30.>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6. “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한다.
7.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을 말한다.
8.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제4조(급여의 기준 등)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급여의 기준은 수급자의 연령, 가구 규모, 거주지역, 그 밖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거나 급여를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 12. 30.>
③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인 보장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장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4. 12. 30.>

□ 주거기본법

제15조(주거비 보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비 부담이 과다하여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저소득가구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저소득가구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청년기본법

제20조(청년 주거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